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황숙희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으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의장 및 사무과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2조, 제3조)

나.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함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직무대리의 목적, 법정 및 지정 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